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8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김윤덕·임오경·장종태

정진욱 • 박지혜 • 민병덕

허 영・정을호・조계원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조제2호 및 제22조의2 신설).

- 나.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 라.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마.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시·도당 및 지역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제30조제1항).
- 사. 지역당은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 35조).
-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자. 정책연구소에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2.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한다)"를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으로 한다.

제6조 중 "100명 이상의"를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이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제13조의 제목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를 "제 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①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

-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한다.
- ③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당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등(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 당의 조직·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등을 갖는다.
 - ②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갖는다.
 - ③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당,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① 정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및 지역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 ·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책연구소에는 지역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7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를 "당대표경선등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를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 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를 "사무소를 둔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의 등록 및 성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및 성립된 정당으로 본다. 다만, 각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 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 및 성립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 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 1.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 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 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 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 <u>당(이하 "시·도당"</u>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 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 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 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 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2.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 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

-----특별시 · 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도당(이 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 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 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제4조(성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 (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 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6조(발기인)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川上(0日) ① (10 0	1 6 0/
②	제17조
(법정시·도당수),	제17조의2

제4조(설립) ① (현해과 간은)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법정지역당수), 제18조(시·도 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 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시· 제9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 당승인) 시·도당 및 지역당--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

<u>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 ~ ③ (생 략)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하다.

1. ~ 5.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	13조 <u>(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u>
	<u>록신청사항)</u> ① ~ ③ (현행
	과 같음)
제	14조(변경등록)
	<u>제13</u>
	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
	<u>신청사항)</u>
	1. ~ 5. (현행과 같음)
제	17조의2(법정지역당수) ① 정당
	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
	<u>야 한다.</u>
	②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
	도에 분산되어야 한다.
	③ 1개의 시·도에 두는 지역
	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u>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제	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
	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u>시·도당</u>은 소 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신 설>

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
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u>·도당 및 지역당</u>
,
시·도당
 및 지역당
- .
(4)
<u>시·도당 및 지역당</u>
 ⑤ (혂행과 같음)
제22조의2(당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다이오 저다이 다쳐 미 다
①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
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

자 등(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의 선 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후보자 로 추천받을 권리, 당의 조직 •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 리 등을 갖는다. ②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 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헌・ 당규를 준수할 의무, 당원으로 서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갖 는다. ③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 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 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 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시·도당, 지역당----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당, 지역당</u>
<u>시·도당, 지역</u>
<u>당</u>
③ <u>시·도당,</u>
지역당

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u>시·도</u>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u>시·도당, 지역당</u>
<u>.</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라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
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탈당) ①
<u>시·도당 또는</u>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당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 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당, 지역당</u>
.
③
<u>이 경우 당원</u>
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
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
<u>다.</u>
④ (현행과 같음)
∥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①
정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u>있다.</u>
② 시·도당 및 지역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중앙당이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금액을 감액한다.
-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 이라 함은 상근 · 비상근을 불 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 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 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 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 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 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 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 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 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 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 의 간부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 저 ・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 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 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 제1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 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

세35조(정기보고)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u>시·도당 및 지역당</u>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

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 략)
 -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 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 다.
-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
<u>수)의 요건</u>	

-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③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 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책연구소에는 지역정책의 개발 •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 해 분원을 둘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현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

•
1. <u>제17조(법정시·도당수), 제1</u>
7조의2(법정지역당수),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및
제18조의2(지역당의 법정당원
수)의 요건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u>(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u>
<u> 승인의 취소)</u>
<u>시·도</u>
<u>당 및 지역당</u>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 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 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죄) ①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 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u>시·도당 또는</u> <u>지역당</u>
·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죄) ① <u>당대표경선등과</u>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	다.			
1	허위로	제19조(즉	스아다이	드

-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 2. (생략)
-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 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 ② (생 략)

1
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
<u>록신청사항)</u>
2. (현행과 같음)
3
사무소를 <u>둔</u>
<u>자</u>
② (현행과 같음)